

## 부가가치세 포탈요인과 포탈성향에 관한 실증적 연구

김 범 진

상지대학교 경영·회계학부 교수

E-mail : bjkim@mail.sangji.ac.kr

함 영 복

세 무 사

수도권에서 사업하는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600명을 대상으로 수집한 자료의 실증분석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첫째, 부가가치세 포탈요인은 재무, 세무행정, 조세지식, 조세윤리, 탈세기대심리, 사회, 제재 요인으로 분류되었다.

둘째, 재무, 조세지식, 사회, 제재 요인이 부가가치세의 포탈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재무 요인에서 납세자의 기업형태와 매출규모에 따른 차이를, 조세지식 요인에서 납세자의 사업기간, 매출규모와 세무조사경험에 따른 차이를 그리고 사회 요인에서 납세자의 세무조사경험에 따른 차이를 확인하였다.

넷째, 포탈성향은 납세자의 기업형태, 업종, 매출규모와 세무조사경험에 따라서 차이를 보였다. 이상의 연구결과는 부가가치세 포탈방지를 위한 조세정책 수립에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줄 것이다.

첫째, 개인 사업자와 매출규모가 작은 사업자에 대해서 세무관리를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유통업인 도·소매업의 포탈정도가 가장 크므로 이에 대한 세무관리의 강화와 함께 유통정보시스템(POS시스템, 거래기록의 전산화, 거래당사자간 EDI 구축 등)의 도입에 대한 세제 및 세정상의 유인책 수립이 요구되어진다.

셋째, 세무조사를 받았던 기업의 포탈성향이 낮으므로 세무조사 경험이 없는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의 확대 실시가 요구되어진다.

넷째, 개인 사업자나 매출 규모가 큰 기업의 경우에 재무 요인이 큰 포탈요인으로 작용하므로 개인 사업자나 매출 규모가 큰 기업을 세무관리를 하는 경우에 재무 요인을 중요하게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 사업기간이 짧을수록, 매출액이 적을 수록, 또한 세무조사 경험이 없는 경우에 조세 지식 요인이 포탈요인으로 크게 작용한다. 따라서 사업기간이 짧거나 매출액이 적거나 세무조사 경험이 없는 납세자를 중심으로 납세교육과 홍보의 강화를 병행하여 세법지식의 부족으로 인한 비자발적 탈세를 예방하여야 할 것이다.

여섯째, 세무조사 경험이 없는 경우에 사회 요인이 포탈요인으로 크게 작용한다. 따라서 세무조사 경험이 없는 납세자를 중심으로 정부와 세무당국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사회적 공평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 I. 서론

조세포탈은 조세정의와 법령을 위반하는 것이지만 우리나라에서 대부분의 납세자가 떼뺏아지는 않지만 별다른 죄의식을 크게 느끼지 않고 있는 것 같아 아쉽다. 이는 납세자가 윤리적·도덕적 관념보다는 경제적 관념을 앞세워 직접적 대가관계에 있지 않은 일방적인 조세부담을 회피하고자 하는 심리에서 유발된다고 보여진다. 부가가치세는 소득세와 법인세 등 소득에 대한 과세의 선행세목으로서 의미가 클 뿐 아니라 이의 포탈은 납세자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징수하여 국고에 불입하여야 할 세액을 포탈한 것으로 국고금 횡령과 같은 것이어서 더 심각하다.

부가가치세는 도입 다음해인 1978년에 전체 간접세의 60.6%, 내국세의 37.2%를 차지하였고(현진권, 1997) 1998년에는 전체 간접세의 75.1%, 내국세의 30.6%를 1999년에는 전체 간접세의 73.5%, 내국세의 36.1%를 차지한 세수 면에서 기여도가 아주 높은 주요 세목이다.(재정경제부, 1999 & 2000) 그러나 도입 이후 현재까지 만연된 탈세<sup>1)</sup>로 인해

일반소비세로서의 부가가치세가 추구하는 간접세의 중립성 유지와 근거과세의 구현 및 자진신고납부풍토의 정착이 성공적이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실정으로 부분적으로는 그 공평성을 상실한 상태이다.<sup>2)</sup>

세부담의 불공평을 초래하는 부가가치세 포탈을 방지하고 규제할 수 있는 수단의 마련이 긴요한 사회·경제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의 포탈 요인들을 찾아보고 포탈요인이 포탈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것이다. 또한 부가가치세 포탈요인 중에서 어떤 요인에서 납세자의 특성에 따른 차이가 존재하는지와 포탈성향에서 납세자 특성별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분석하여, 부가가치세에 관한 발전적 포탈방지 방안을 모색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II에서 연구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포탈에 관한 이론적 검토를 하고, III에서 연구의 과제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연구설계를 하였다. IV에서 실증적 분석의 결과와 해석을 하고, V에서 분석결과를 기초로 하여 부가가치세 포탈방지 방안을 제시하고, VI에서 이상의 연구 결과를 종합 정리하고, 연구의 한계와 제언을 기술하였다.

1) 동아일보와 참여연대가 99. 7. 10.부터 99. 7. 14.까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 중 일반인의 89.3%, 국회의원의 92.2%, 조세관련 학자의 88%가 '세금부담이 불공평하다'고 답했다. 탈세의 정도에 대해서도 일반인 88.3%, 국회의원 92.1%, 조세관련 학자 86%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응답했다. 탈세행위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국제성을 갖는 보편적 현상으로 보여진다.(Alm, 1991, p.577)

2) 우리나라의 경우 일반소비세로서의 부가가치세 도입목적과 배경은 ① 세제 및 세정의 간소화, ② 수출 및 투자의 촉진, ③ 간접세의 중립성 유지, ④ 근거과세의 구현 ⑤ 세수의 안정적 확보였다.(재무부, 1990, p.112)

## II. 부가가치세 포탈에 대한 이론적 검토

### 1. 부가가치세와 조세포탈의 개념

부가가치세는 간접세의 일종인 일반소비세로서 모든 재화와 용역에 과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납세자가 부가가치세를 구매자에게 전가하는 것을 예정하고 있는 세제이다. 일반적으로 소득세, 물품세 등의 세금 명칭은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 또는 물품에 대한 세금이지만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 자체가 과세표준이 되며, 부가가치 자체에 대한 세금이 아니라 부가가치에 비례하여 구매자에게 전가할 수 있는 세금이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를 처음 도입할 때에는 그 명칭 자체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sup>3)</sup> 이와 같이 부가가치세는 재화와 서비스의 공급(판매)시에 과세하는 소비세이다.(유시권, 1996)

조세포탈행위 즉 탈세행위(tax evasion)란 사기 또는 기타 부정한 위법행위에 의해 과세요건이 충족된 사실관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속여 조세를 면탈하는 불법행위로서 조세포탈의 범죄를 구성한다. 따라서 탈루세액의 추징과 함께 처벌(벌금 또는 징역 및 체형)을 받게 된다. 조세회피행위는 사법상으로는 유효한 법형식의 남용과 조세법

의 결함을 이용하여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행위이기는 하지만 법규정을 직접 위반하지 않는데 반하여, 조세포탈은 위법한 부정행위에 의해 조세법의 규정을 직접 침해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면탈하는 불법행위이다. 따라서 조세회피행위는 세법규정의 간접적 침해(an indirect violation of tax provision)이고, 조세포탈은 세법규정의 직접적 침해(a direct violation of tax provision)라고 하기도 한다.(최명근, 1998, p.131)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탈세의 기본적인 대표적 수단을 들면 다음과 같다.(이범관, 1998, pp.9-11)

- ① 세무자료 및 세무정보의 미제출
- ② 매출누락 또는 가공매입 등 허위신고
- ③ 이중장부의 작성, 허위세금계산서의 발행 등 회계장부 및 회계처리의 조작
- ④ 과세기간귀속의 활용

### 2. 조세포탈에 관한 연구 동향

조세에 관한 최근의 연구는 행동과학적으로 접근하는 복합적 경향을 갖는다.(이기형, 2000) 이러한 경향을 나타내는 연구는 세무규제에 대한 행동적 효과(Milliron, 1985), 조세의 인센티브 효과(White, 1983), 조세포탈 및 회피에 대한 연구 등이다. 조세포탈 또는 회피와 관련된 행동과학적 연구는 세무정책의 수용에 관한 회계학 연구의 특수분야로 인식되고 있다.

조세회피 및 탈세에 관한 국내의 연구는 미진한 편이며, 납세자를 상대로 한 직접적

3) 이러한 이유로 뉴질랜드는 1986년에 이른바 EC형 부가가치세를 도입하면서 그 명칭을 부가가치세라고 하지 않고 “재화·서비스세(Goods and Services Tax : GST)”라고 명명하였다.

연구는 거의 없다. 특히 간접세인 부가가치세 분야의 조세회피 또는 탈세요인과 그 성향에 관한 연구는 매우 적다. 따라서 국내의 선행연구에서 분석·논의된 연구결과를 조세회피 또는 탈세의 요인으로 그대로 수용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 또한 조세회피나 탈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민족성·윤리수준·사회적 제도·문화·세금에 대한 의식 등 나라마다의 특성 요인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와 같이 납세도의와 윤리수준이 비교적 낮고 특례적 과세제도가 많은 경우에, 조세포탈의 제도적 방지책이 법령에 마련되어 있지 않거나 세무행정에서 세무조사 강화와 처벌 등이 포탈방지에 유효한 수준 이상으로 유지되지 않는다면 이는 납세자의 도덕적 해이를 가져와 조세포탈의 증가를 초래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세포탈에 관한 연구는 초기의 이론적 연구에서 실증적 연구로 확대되어 왔다. 초기의 이론적 연구는 납세자의 경제적 동기에 치우쳐 제재적 요인만을 중심으로 조세회피에 대한 영향을 밝혔다.(Jackson and Milliron, 1986. 이기형, 2000)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납세자의 태도나 동기 등 사회·심리적 요인 등을 포함시켜 조세회피에 대한 실증분석의 타당성을 높이려고 하였다.<sup>4)</sup>

4) 선행연구는 조세포탈에 대한 제반 규제 및 개선방안이 합리적으로 강구되는 경우에 납세도의와 윤리수준을 직·간접적으로 높여서 자발적·비자발적 탈세의 방지에 효율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론적 연구와 실증적 연구에 대해서 요약하여 검토하기로 한다.

### 가. 이론적 연구

1970년대 이후 경제학자를 중심으로 진행되었고, 이론적 연구는 주로 세율·적발 확률·벌금률·납세자 개인의 선호도 등 제재적 요인이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을 경제학적 접근법에 의해 밝히고자 하였다. 이론적 분석모형에 의한 연구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가정조건 하에 그 연구가 전개되고 있으며(임원식, 1998, pp.34-35), 실증분석에서 중요시하고 있는 납세자의 조세태도 내지 조세윤리와 같은 심리적 요인은 거의 고려하지 않았다.

첫째, 납세자는 기대 효용(소득)함수를 극대화시키려 한다.

둘째, 납세자는 불확실한 상황 하에서 의사결정을 한다. 따라서 납세자는 자신의 조세회피 행위의 적발 여부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조세회피 여부를 결정한다.

셋째, 납세자는 적발 시의 제재 정도 및 주관적인 적발 확률에 입각하여 조세회피에 대한 의사결정을 한다.

넷째, 납세자는 세금과 관련하여 도덕성과 윤리성이 결여되어 있다.

Cuccia는 조세회피에 관한 연구를 연구관점에 따라 일반적 제지이론(general deterrence theory), 경제적 제지모형(economic deterrence model), 재정적 심리이론(fiscal psychology)의 세 가지로 분류하였다.(Cuccia, 1994, pp.81-86) 조세회피에 관한 주요 이론적 연구를 요약하면 <표 2-1>과 같다.

〈표 2-1〉 이론적 연구의 요약

연구자	연구 주제	가정조건 및 분석대상	연구 결과
Allingham & Sandmo(1972)	소득신고에 대한 조세회피의 의사결정	소득세율은 단일비례 세율, 납세자는 비도덕적	조세회피에 관한 이론을 수집하여 일반화시킴
Srinivasan (1973)	"	누진세율과 위험 중립적인 납세자	적발확률을 높이면 소득 신고 수준이 높아짐
Yitzhaki (1974)	"	납세자의 과소신고 소득에 벌금부과	세율이 증가하면 조세회피는 감소
Christiansen (1980)	"	조세회피 적발확률과 벌금과의 관계	적발확률이 낮고 벌금이 무거운 경우가 적발확률이 높고 벌금이 가벼운 경우보다 더욱 효과적
Cross & Shaw (1983)	탈세·절세의 의사결정 모델	발각확률, 벌금률과 세율을 비교	벌금율이 증가하면 탈세 감소 : 누진소득의 경우 제외
Benjamini & Maital(1985)	과소신고와 사회적·정신적 불명예원가의 효용함수	다른 납세자의 조세회피 정도에 영향	의사결정시 다른 납세자의 영향

자료 : (권학중, 1999, p.28)와 (최평윤, 1997, pp.19-23)을 수정·보완 함.

### 나. 실증적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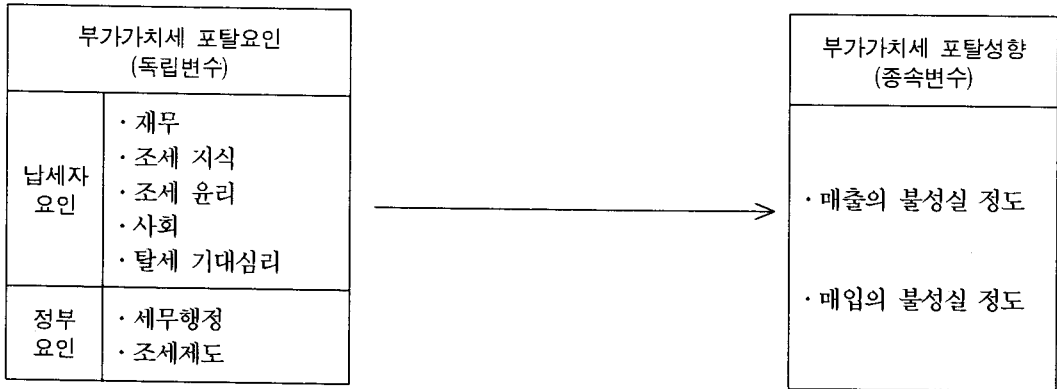
이론적 연구는 조세회피요인의 분석에 있어 경제적 요인만을 이용하므로 요인의 수에 제약이 있을뿐만 아니라 현실성이 결여되어 있다. 실증적 연구는 이론적 연구에서 간과하였던 납세자의 태도나 동기에 초점을 두고 조세회피 영향요인과 조세회피와의 상호관계를 실증적 방법에 의해 분석하고자 하는 것으로 회계학 분야에서의 연구는 대부분 이 방법에 의한다. 실증분석에서 사용되는 조세회피의 주요 요인은 나이·성별·

교육수준·소득수준·소득원천·동료집단·조세윤리·공평성·조세제도의 복잡성·과세당국의 간섭·제재수준·적발확률 및 세율 등이다.(이기형, 2000, p.22) 이러한 요인들에 의한 연구결과는 연구자마다 각기 다르나, 일반적으로 나이가 어릴수록, 남성일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동료집단이 조세를 회피할수록, 조세윤리수준이 낮을수록, 납세가 조세제도를 불공평하다고 인지할수록, 조세제도가 복잡할수록, 제재수준이 낮을수록, 적발확률이

〈표 2-2〉 실증연구의 요약

연구 방법	연구 자	대 상	독 립 변 수	종속변수
조사	Spicer & Lundstedt(1976)	오하이오 거주인 130명	나이 · 소득 · 교육 · 정당관계 · 공정성 · 알려진 탈세자 · 발각 확률 · 제재의 엄격성	조세지향 척도, 탈세자지수
	Song & Yarbrough (1978)	295명의 납세자	인종 · 결혼여부 · 소득 · 소외감 · 불신 · 교육 · 재정문제 · 정치적 효율 · 지식	조세윤리
	Dean, Keenan & Kenny(1980)	스코틀랜드 Five의 424명의 납세자	나이 · 성별 · 결혼여부 · 사회적 지위	탈세의 정당성
	박영강(1990)	부산 · 경남지역의 제조업체 619개	납세자(조세전가력 · 납세도의), 세법내용(세율 · 벌금의 부담 정도), 집행자(공무원 정령도 · 적발능력), 환경(소득세제 · 법인세제의 적합성)	부가가치세의 포탈정도
	김진환(1998)	207개 상장기업과 122개 비상장기업	정부신뢰도 · 납세풍토 · 납세의식 · 과세공평성 · 조세부담감 · 재정공평성 · 제재정도 · 행정능력 · 세제복잡성	조세회피성향
	권학중(1999)	대전 · 전북지역 부가가치세 납세자 500명	성별 · 결혼여부 · 부양가족수 · 나이 · 소득수준 · 교육수준 · 업종 · 세무조사확률 · 조세회피만연도 · 납세자의 세법지식 · 소득수준 · 순이익 · 세금계산서발행정도 · 무자료거래	부가가치세의 조세회피 규모
	이기형(2000)	업종별 총 300개 법인	업종 · 소유구조 · 총자산규모 · 매출액규모 · 법인세 과세표준 · 세무조사경험유무 · 세무조정실무경력, 조세윤리, 조세제도(조세제도 · 세무양식의 복잡성), 조세심리(동료법인 · 과세공평성 · 조세회피의 기회 · 제정만족도 · 비제도적 제재 · 조세회피만연도), 조세지식(납세자 세법지식 · 예산정책에 관한 지식), 사회문화적 요인(정부신뢰도 · 조세서비스 · 사회성향 · 세무대리인), 체제수준, 인성적 요인, 재무적 요인, 세율, 조세회피기대효과	조세회피성향
실험	Friedland, Maital & Rutenburg(1978)	이스라엘의 25세 심리학 전공학생 15명	발각확률, 벌금의 크기, 세율, 나이, 성별	과소보고의 범위와 확률
	Spicer & Becker (1980)	콜로라도대학 학생 57명(남자 21명, 여자 36명)	조세체계에서 인식된 불공평성과 조세회피사이의 관계, 성별, 세율	조세회피정도
	전태영(1990)	실험참가자 81명, 8회 반복	소득수준, 세율, 정부신뢰도	조세회피성향 조세회피규제에 대한 납세자의 반응, 벌칙수준
	유시영(1998)	잠재납세자 집단과 사업자 집단	소득수준, 세율, 적발확률, 가산세율	조세회피태도
회귀	Clotfelter(1983)	약 47,000건의 세금신고서 : 1969년 미국 국세청(IRS)의 TCMP(Taxpayer Compliance Measurement Program)자료	세후소득의 대수(logarithm), 개인의 한계세율, 임금, 이자와 배당, 배우자 유무, 나이,	과소신고 소득의 대수(logarithm)
	Witte & Woodbury (1985)	1969년 미국 국세청(IRS)의 TCMP(Taxpayer Compliance Measurement Program)자료	세무조사 확률, 벌금, 처벌, 조세회피의 기회, 납세자의 태도 (경부에 대한 태도 · 세전소득 · 나이)	연방소득세의 차별적 납부성정도 수준
	최평윤(1996)	170개 법인 개인사업자 119명, 양도소득세 납세자 74명, 195명의 부가가치세 납세자	나이 · 성별 · 소득수준 · 세율 · 세무조정자 · 업종 · 법인의 유형 · 세무조사방법 · 부가가치세의 과세유형	법인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의 세목 별 조세회피율

자료: (권학중, 1999, p.29)와 (최평윤, 1997, pp.23-37)을 수정 보완



<그림 3-1> 포탈요인과 포탈성향의 관계

낮을수록, 세율이 높을수록 조세회피의 경향이 높게 나타났다.

조세회피요인에 관한 실증연구는 주로 조사, 실험과 회귀분석방법을 적용한 것으로 이들 연구내용을 요약하면 <표 2-2>와 같다.

### Ⅲ. 연구의 설계

#### 1. 연구의 과제

첫째,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에 대해 포탈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는 부가가치세 포탈요인의 속성을 추출할 것이다.<sup>5)</sup> 포탈성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는 경제적 요인 외에 사회·심리적 요인을 포함시켜 87개의 속성을 대상으로 요인분석을 통하여 부가가치세의 포탈요인을 분류·선

정할 것이다.

둘째, 요인분석에서 선정된 부가가치세 포탈요인이 부가가치세 포탈성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 분석하려고 한다. 이들 관계는 <그림 3-1>을 참고할 수 있다.

셋째, 요인분석에서 선정된 부가가치세 포탈요인이 납세자의 특성에 따라서 차이가 존재하는 지 검증할 것이다. 납세자의 특성은 납세자의 형태, 업종, 사업기간, 매출 규모, 세무조사 경험을 적용하였다.

넷째, 부가가치세 포탈성향이 납세자의 각 특성별로 차이가 존재하는 지 검증할 것이다.

#### 2. 자료의 수집과 표본의 선정

##### 가. 자료의 수집

납세자의 부가가치세에 대한 포탈요인이나 포탈성향을 확인하기 위해서 설문서를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설문서에 포함할 항목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각종 세목의 조세회피 요인에 관한 선행연구의 설문

5) 선행연구 중 부가가치세 포탈요인에 관한 박영강(1990년)과 권학중(1999년)의 연구와 법인세 회피요인에 관한 이기형(2000년)의 연구모형을 참고하였다.

〈표 3-1〉 설문서의 배포와 회수 현황

배 부	회 수 현 황		
	회 수	유효	유효 회수율(%)
600	308	302	50.33

항목을 참고하고 세제 및 세정 상 부가가치세의 주요 포탈요인으로 판단되는 항목을 선정하여 관련 교수와 세무사들과의 패널토의(panel discussion)를 거쳐 결정하였다. 특히 설문지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유의한 기준은 다음과 같은 점들이다.(Szilagyi and Wallace, 1987)

- 첫째, 연구 주제에 필수적인 문항일 것.
  - 둘째, 반복적 · 중복적 질문이 아닐 것.
  - 셋째, 응답이 가능할 것.
  - 넷째, 편의를 유도하지 않을 것.
  - 다섯째, 조사대상의 모티베이션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할 것.
- 최초로 선정되어 추출된 설문문항은 예비 조사를 통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크론바하 알파(Cronbach's  $\alpha$ )계수에 의한 신뢰도 검증의 예비검증 절차를 거쳐 일부 문항을 제외시킴으로써 개념의 타당성과 내적 일관성이 확보되도록 설문을 설계하였다.

### 나. 조사대상의 선정

부가가치세는 납세자의 과세유형이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뉘며, 따라서 포탈의 문제도 양자 모두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부

가가치 세제와 세정에서의 핵심을 이루는 세금계산서의 교부와 수취가 모두 가능한 일반과세자만을 그 대상으로 하였다.

### 다. 표본의 선정

서울과 인천 · 경기 지역의 수도권에서 사업하는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를 모집단으로 하여 업종별(제조, 도 · 소매, 건설 등)로 총 600개 사업자를 임의 추출<sup>6)</sup>하여 당해 사업자를 직접 방문하여 설문지를 배부하고 회수하였다. 설문서의 배부 시 설문의 취지를 설명하여 설문서의 내용을 잘 이해하고 응답할 수 있도록 하였다. 표본으로 선정된 기업에 대한 설문서의 배포와 회수 현황은 <표 3-1>과 같다.

## 3. 변수의 정의와 측정

조세회피에 관한 선행연구는 탈세를 조세

6) 설문서의 문항 중 세무대리인에의 의존 여부에 관한 문항이 있어 표본 선정 시 서울과 수도권 소재 세무사의 협조 하에 당해 세무사와 업무 협력관계에 있는 사업자만을 추천형식으로 임의 선정하였다. 그러나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가능한 한 업종별 안배가 고르도록 하였으며, 당해 세무사가 설문서 배부 전에 연구자의 방문목적과 연구취지 등을 사업자에게 알리고 최대한 정직한 응답을 권유토록 하였다.



〈표 3-2〉 납세자 요인의 속성

요 인	속 성
재 무	현금유동성, 이익률, 소득세(법인세)회피효과, 경쟁력, 상대적 불이익, 세부담, 매출의 노출정도, 이중장부의 은닉, 탈세위험과 효익
조세 지식	납세자 세법지식, 개정세법정보 접근용이성, 세법의 복잡성, 납세교육
조세 윤리	성실납세의식수준, 탈세에 대한 죄의식, 도덕적 가치관
사 회	정부와 세무당국 신뢰도, 사회적 공평성·책임성, 세금과 사회복지향상
탈세 기대심리	세무공무원과의 인간관계, 세무대리인에의 의존, 소득세(법인세) 절감 기대, 차명계좌의 활용

회피에 포함시키는 관점에서 연구가 전개되고 있으며, 실제로는 조세회피를 탈세와 동등한 의미로 보고 있다. 그러나 실정법 상 간접세인 부가가치세의 경우 탈세와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 등 조세회피에 대한 개념적·법률적 구분이 없다. 엄격히 말하여 법이론 및 과세 구조상 절세 또는 조세회피의 적용 여지가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위법한 탈세인이 아니면 적법한 성실신고인가의 구분만 남게 된다. 이러한 견지에서 본 연구의 대상인 부가가치세 포탈은 이론적·개념적 구분에서 탈세를 의미하는 것으로 한정하기로 하였다.

### 가. 부가가치세 포탈요인

#### (1) 납세자 요인

조세포탈의 직접적이고 우선적인 귀책사유가 납세자에게 있는 경우에 조세포탈과 상관관계에 있는 요인을 말한다. 이는 구체적으로 재무, 조세지식, 조세윤리, 사회, 탈세기대심리의 다섯 가지 요인으로 각 개별 요인에 대한 속성은 <표 3-2>과 같다. 각 요인에 대한 각 속성을 측정하기 위해 Likert의 5점 척도로 측정된 총화평균척도를 이용하였다.

#### (2) 정부 요인

조세포탈의 직접적이고 우선적인 귀책사

〈표3-3〉 정부 요인의 속성

요 인	속 성
세무 행정	행정규제와 간섭, 세무조사확률, 적발확률, 처벌수준, 과세자료수집 및 관리, 탈세단속, 청렴도, 현금거래업종관리, 영세사업자 관리
조세 제도	제재수준, 제도의 공평성·효율성

〈표 3-4〉 포탈성향의 측정항목

매출의 불성실 정도	매출세금계산서의 미교부 정도, 위장·가공매출의 정도
매입의 불성실 정도	매입세금계산서의 수취거부 정도, 위장·가공매입의 정도

유가 정부에 있는 경우에 조세포탈과 상관 관계에 있는 요인을 말한다. 이는 구체적으로 세무행정, 조세제도 요인의 두 가지이며, 각 개별 요인에 대한 속성은 <표3-3>과 같다. 각 요인에 대한 각 속성을 측정하기 위해 Likert의 5점 척도로 측정된 총화평균척도를 이용하였다.

#### 나. 부가가치세 포탈성향

부가가치세 포탈성향은, 포탈의 규모를 사실대로 직접 파악하는 것이 어려운 현실에서, 이를 간접적으로 측정하여 포탈의 정도를 등간척도 또는 비율척도 등의 수단에 의해 상대적으로 인식·평가하고자 하는 변수이다. 이는 납세자들의 특성 요인이 조세포탈에 미치는 영향으로 정의되기도 한다. (최평윤, 1997)

부가가치세는 소득에 대한 과세와는 달리 납세자인 사업자의 매출과 매입에 따라 납부세액의 규모가 결정된다. 매출·매입의 가장 중요한 증빙이 세금계산서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종속변수로서의 부가가치세 포탈성향을 <표 3-4>와 같이 매출액과 매입액의 불성실신고의 정도로 하였다. 매출액과 매입액의 불성실신고의 정도는 Likert의 5점 척도에 의해 측정된 총화평균척도로 정의하고자 한다.

#### 4. 분석 및 검증방법

회수된 설문서는 사회과학 통계분석 프로그램인 SPSS 9.0 for Windows를 사용하여 분석 처리하였다. 회수된 설문의 각 문항을 관련 변수끼리 묶어 주는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을 실시하여 관련성이 없는 요인을 제외시켜 변수의 동질성과 개념의 타당성을 확보하고, 각 요인에 속한 구성변수간에 내적 일관성(internal consistency)이 있는가를 크론바하 알파(Cronbach's  $\alpha$ )계수에 의해 측정하여 신뢰도를 검증하였다.

부가가치세의 포탈요인이 포탈성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변수제거법(Stepwise Method)에 의한 다중회귀분석방법을 사용하여 포탈성향에 영향력(설명력)이 높은 요인만을 추출하였다. 응답한 사업자의 특성에 따른 포탈요인의 차이와 사업자의 특성에 따른 포탈성향과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t검증과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다.

### IV. 실증분석의 결과와 해석

#### 1. 부가가치세 포탈요인

##### 가. 요인 분석

부가가치세 포탈요인 7개에 대한 속성 87

개에 대하여 개념 타당성과 신뢰성을 검증하여 64개의 요인속성을 추출하였다. 각 포탈 요인에 대한 속성의 내용과 문항 수, 그리고 설문 302개에 대한 각 요인별 평균값과 표준편차는 <표 4-1>과 같다.

부가가치세 포탈요인에 대한 응답에서 납세자들은 다음과 같은 경향을 보였다. 즉 납세자들은 사회 요인에서 부정적(평균값; 4.025)이고, 세무행정 요인은 잘 못(평균값; 3.710)되었지만 조세윤리는 좋은 편(평균값; 3.802)으로 느낀다는 것이다. 또한 세무지식은 부족(평균값; 3.497)하다고 느끼고 그 외

의 요인은 대체로 중립적인 입장이다. 중립적 입장을 보이는 것은 포탈요인에 대해서 응답한 기업들이 응답에서 중앙집중화 현상을 가지는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중앙값인 3에 근사한 값으로 나타났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결과는 부가가치세의 개선방안에 대한 필요성을 시사하는 바가 크지만 납세자 중심의 보수주의(conservatism)적 사고에 의한 편의도 반영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 나. 측정도구의 평가

7개의 요인과 87개의 속성에 대한 개념

<표 4-1> 요인별 측정치와 속성

측정치, 속성 요인 (문항 수)	평균 값 (표준편차)	속 성
재무 (18)	3.225 (0.884)	현금유동성, 이익률, 소득세(법인세)회피 효과, 경쟁력, 상대적 불이익, 세무담, 매출의 노출정도, 이중장부의 은닉, 탈세위험과 효익
세무 행정 (15)	3.710 (0.671)	행정규제와 간섭, 세무조사확률, 적발확률, 처벌수준, 과세자료 수집 및 관리, 청렴도, 탈세단속, 현금거래 업종 관리, 영세사업자 관리
조세 지식 (10)	3.497 (0.846)	납세자 세법지식, 개정세법정보 접근용이성, 세법의 복잡성, 납세교육
조세 윤리 (8)	3.802 (0.758)	성실납세의식수준, 탈세에 대한 죄의식, 도덕적 가치관
탈세 기대심리 (7)	2.776 (0.881)	세무공무원과의 인간관계, 세무대리인에의 의존, 소득세(법인세) 절감 기대, 차명계좌의 활용
사회 (4)	4.025 (0.801)	정부와 세무당국 신뢰도, 사회적 공평성·책임성, 세금과 사회 복지향상
제재 (2)	2.873 (1.102)	제재수준

〈표 4-2〉 요인분석의 측정치

측정치 \ 요인	재무	세무 행정	조세 지식	조세 윤리	탈세 기대심리	사회	제재
아이겐 값	8.028	6.192	5.275	4.543	4.213	3.371	2.708
변량의 설명력	9.228	7.117	6.063	5.222	4.843	3.875	3.113
누적설명력	9.228	16.345	22.408	27.630	32.472	36.347	39.460
신뢰성( $\alpha$ )	.8999	.8408	.8548	.7385	.7612	.6809	.4892

[주] Extraction Method :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Rotation Method : Varimax with Kaiser Normalization.

a. Rotation converged in 13 iterations.

타당성과 신뢰성을 평가한 측정치는 <표 4-2>와 같다.

(1) 개념 타당성

변수를 구성하는 문항들간의 동질성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varimax법에 의한 요인회전을 이용하고 최소 고유치 아이겐 값 2 이상(을 적용해 부가가치세 포탈요인의 속성을 추출하였다.

최종 선택된 7개 요인과 64개 속성은 요인적재량이 0.4 이상인 경우를 기준으로 하였다. 도출된 각 요인은 속성의 공통점에 따라 요인 명을 부여하였으나, 조세제도 요인은 제재적 속성만 도출되어 제재 요인으로 명명하였다.

요인분석을 통하여 제거된 23개 문항을

7) 일반적으로 아이겐값을 1 이상으로 하여 요인분석을 행하나 본 연구의 설문문항이 많은데 비하여 회수된 설문서의 수가 상대적으로 적어 varimax 방식에 의한 요인의 회전적재가 이루어지지 않아 최소 고유치를 2 이상으로 하여 분석하였다.

제외하고는 각 요인별로 묶여진 속성이 당초 의도한 바와 크게 다르지 않아 각 구성요인별로 개념 타당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조세제도 요인 중 부가가치세 제도의 공평성·효율성에 관련된 설문 문항은 응답자의 보다 정밀한 세법 지식이 요구되는 관계로 인하여 연구 의도대로 묶이지 않았다.

(2) 신뢰도 검증

측정도구의 신뢰도 검증을 위하여 변수간 내적 일관성을 나타내는 Cronbach's  $\alpha$  계수를 이용하였다. 신뢰도 검증을 위한 기준은 선행연구 등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이 Cronbach's  $\alpha$  값 0.5 이상으로 하였다. Cronbach's  $\alpha$  값은 문항 수가 적은 제재 요인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높게 나타나 각 요인별 구성 항목들이 전반적으로 높은 내적 일관성을 갖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표 4-3> 부가가치세 포탈요인이 포탈성향에 미치는 영향

포탈요인	부가가치세 포탈성향				R2	F	Sig.
	B (중요도 지수)	$\beta$	t	유의도			
상수(Constant)	.473	-	.296	.768	.422	54.313	.000**
채무	4.233	.619	12.019	.000**			
제재	.535	.102	2.302	.022*			
조세 지식	.997	.146	2.786	.006**			
사회	-.976	-.135	-2.668	.008**			

\* p < 0.05, \*\* p < 0.01

## 2. 부가가치세 포탈요인이 포탈성향에 미치는 영향

부가가치세의 포탈성향을 세금계산서의 불성실 교부·수취와 위장·가공의 정도에 의해 응답된 설문서 302개를 측정된 결과 부가가치세의 포탈성향이 3.0960(표준편차; 1.183)으로 나타났다. 이는 포탈성향에 대해서 응답한 기업들이 스스로 포탈하고 있음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응답의 중앙집중화 현상의 결과로 중앙값인 3에 근사한 값으로 나타났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부가가치세 포탈요인이 포탈성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표 4-3>과 같다. 7개의 부가가치세 포탈요인 중 3개의 포탈요인(세무 행정, 조세 윤리, 탈세 기대심리)은 부가가치세의 포탈성향에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7개의 포탈요인 중 4개의 요인(채무, 제재, 조세 지식, 사회)이 부가가치세 포탈성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부가가치세 포탈요인이 포탈성향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는 중요도(B)의 값으로 알 수 있다. B값<sup>8)</sup>은 회귀방정식의 회귀계수로 독립변수 1단위가 변화할 때 그 회귀계수의 크기만큼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크기이다. 따라서 포탈요인 중 채무 요인, 조세 지식, 사회, 제재 요인의 순서로 포탈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사회 요인은 중요도가 -.976으로서 오히려 포탈성향의 감소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8) 독립변수들간의 측정단위가 다를 때에는 B(회귀계수)값만으로 중요도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독립변수들의 단위를 표준화시킨  $\beta$ (표준화계수)값에 의해 독립변수들의 상대적 중요도를 판단한다. 즉  $\beta$ 는 B의 상대적 중요도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간의 상대적 중요성을 나타낸다. 본 다중회귀분석에 포함된 원인변수들의 측정단위는 모두 같기 때문에 독립변수들의 상대적 중요도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편회귀계수(B : partial regression coefficient)를 이용하였다.

로 밝혀졌다. 일반적으로 사회 요인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조세포탈의 감소를 초래할 것이므로 사회 요인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포탈성향과 부(-)의 관계를 형성할 것이다. 사회적 부정적 인식은 부가가치세의 포탈을 적게 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R2의 값은 .422로서 부가가치세 포탈요인이 포탈성향에 미치는 영향의 관계를 비교적 적절하게 설명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다중회귀분석의 결과를 회귀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text{<식 4-1> 부가가치세 포탈성향} = 4.233 \times \text{재무 요인} + 0.535 \times \text{제재 요인} + .997 \times \text{조세 지식 요인} - 0.976 \times \text{사회 요인}$$

### 3. 포탈요인의 차이

포탈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된 4개의 포탈요인인 재무, 제재, 조세 지식, 사회 요인이 납세자의 특성에 따라서 차이를 보이는 지 검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납세자의 특성은 기업형태, 업종, 사업기간, 매출 규모, 세무조사 경험의 5개를 적용하였다.

#### 가. 재무 요인의 차이

재무 요인에서 납세자의 특성에 따라서 유의수준 1%에서 차이를 보인 특성은 기업형태와 매출액 규모이다. 보다 정밀한 차이의 분석을 위해 사후검증인 Scheffe 검증에서 매출액 31억 이상인 기업과 5억 이하인 기업이 유의수준 1%에서 차이를 보였다.

<표 4-4> 기업형태별 차이

기업형태	빈도	평균	t값	Sig.
개인사업자	180	3.4244	4.718	.000**
비상장법인	109	2.9608		

\*\* p < 0.01

<표 4-5> 매출 규모별 차이

매출액 (1999년 기준)	빈도	평균	제공합	자유도	평균제공	F값	Sig.
5억이하	148	3.3176	8.193	3	2.731	3.949	.009**
10억이하	54	3.2747					
30억이하	49	3.2698					
31억이상	51	2.8627					
오차	-	-	206.091	298	.692		

\*\* p < 0.01

기업형태와 매출액 규모별 차이의 분석결과를 정리한 것이 <표 4-4>와 <표 4-5>이다.

개인사업자와 비상장법인간 재무 요인에 관한 차이를 분석한 결과, 개인사업자에게 비상장법인보다 더 큰 조세포탈 요인이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규모별 재무 요인에 관한 차이를 분석한 결과, 매출규모가 31억 이상 기업과 10-30억 기업간 약간의 차이를 보이긴 하

나, Scheffe 검증에 의하면 31억 이상과 5억 미만의 매출액 규모의 기업간 차이를 의미 있게 해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5억 이하의 매출 규모의 기업은 31억 이상 매출 규모의 기업보다 큰 조세포탈 동기를 가진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분석을 통해 개인사업자나 매출 규모가 작은 기업이 재무 요인에 의한 탈세 동기가 클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표 4-6> 사업기간에 따른 차이

사업 기간	빈 도	평 균	제 곱 합	자 유 도	평 균 제 곱	F값	Sig.
15년이상(85년이전 개업)	62	3.1742	11.594	3	3.865	5.653	.001*
10년이상(90년이전 개업)	39	3.3846					
5년이상(95년이전 개업)	85	3.5129					
5년미만(96년이후 개업)	116	3.6966					
오 차	-	-	203.744	298	.684		

\*\* p < 0.01

<표 4-7> 매출액 규모에 따른 차이

매출액 (1999년 기준)	빈 도	평 균	제 곱 합	자 유 도	평 균 제 곱	F값	Sig.
5억이하	148	3.5176	11.014	3	3.671	5.355	.001**
10억이하	54	3.6963					
30억이하	49	3.6286					
31억이상	51	3.1020					
오 차	-	-	204.323	298	.686		

\*\* p < 0.01

〈표 4-8〉 세무조사 경험에 따른 차이

조사 경험	빈도	평균	t값	Sig.
없다	252	3.5437	2.180	.030*
있다	49	3.2571		

\* p < 0.05

### 나. 조세 지식의 차이

부가가치세의 포탈요인 중 조세 지식이 납세자의 특성에 따라서 유의수준 1%에서 차이를 보인 특성은 사업기간, 매출액 규모이고 유의수준 5%에서 차이를 보인 특성은 세무조사 경험이다. Scheffe 검증을 실시한 결과, 사업기간이 15년 이상인 경우와 5년 미만인 경우가 유의수준 1%의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기간, 매출액 규모와 세무조사 경험에 대한 차이분석 결과를 정리한 것이 <표 4-6>, <표 4-7>과 <표 4-8>이다.

사업기간에 따른 조세 지식 요인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사업기간이 길수록 적은 조세포탈 요인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사업기간의 차이에 따라서 조세지식의 차이가 생기게 되고 따라서 포탈요인에 있어서 차이를 발생시킬 수 있을 것으로 해석된다.

매출규모에 따른 조세 지식 요인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매출액 규모가 31억 이상 기업의 경우에 조세포탈 요인이 적게 작용하였다. 10-30억과 5억 이하 매출액 규모의 기업간 약간의 차이를 보이긴 하나, Scheffe 검증에 의하면 31억 이상과 5억 미만의 매

출액 규모의 기업간 차이를 의미 있게 해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31억 이상의 기업은 대체로 전문 회계담당 부서를 가지고 있으므로 조세 지식에서 타 기업 군과 차이를 가지며, 따라서 포탈요인이 적게 작용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세무조사경험에 따른 조세 지식 요인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세무조사를 한 번도 받지 않은 기업이 조사를 받은 경험이 있는 기업보다 조세포탈 요인이 낮았다. 세무조사를 받은 기업은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조세 지식이 향상될 것이기 때문에 조세포탈에 있어서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기업과 차이를 보일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의 분석을 통해서 사업기간이 짧은 기업, 매출 규모가 작은 기업과 세무조사 경험이 없는 기업이 조세 지식 요인에 의한 탈세 동기가 클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 다. 사회 요인의 차이

부가가치세의 포탈요인 중 사회 요인이 납세자의 특성에 따라서 유의수준 5%에서 차이를 보인 특성은 세무조사 경험이다. 세무조사 경험에 따른 차이분석 결과를 정리한 것이 <표 4-9>이다.



〈표 4-9〉 세무조사 경험에 따른 차이

세무조사 경험	조사경험	빈도	평균	t값	Sig.
사회 요인	없다	252	4.0744	2.446	.015*
	있다	49	3.7704		

\* p < 0.05

세무조사 경험에 따른 사회 요인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 이내에 세무조사의 경험이 없는 기업이 있는 기업보다 더 큰 조세포탈 요인을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세무조사의 경험이 있는 기업은 자신의 조세포탈을 비난하는 사회적 공평성과 책임성을 의식해서 조세포탈을 줄이려는 경향이 생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상의 분석을 통해서 세무조사 경험이 없는 기업이 사회 요인에 의한 탈세동기가 클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 4. 포탈성향의 차이

부가가치의 포탈성향이 납세자의 특성(기업형태, 업종, 사업기간, 매출규모, 세무조사 경험)에 따라서 차이를 보이는지 검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4-10〉 기업형태별 차이

기업형태	빈도	평균	t값	Sig.
개인기업	180	3.4056	5.433	.000**
비상장법인	109	2.6651		

\*\* p < 0.01

〈표 4-11〉 업종별 포탈성향의 차이

업종	빈도	평균	제공합	자유도	평균제곱	F값	Sig.
제조	84	3.1012	13.068	3	4.356	3.2132	.026*
도·소매	118	3.3390					
건설	23	2.7283					
음숙·서비스	60	2.8667					
오차	-	-	390.878	281	1.391		

\* p < 0.05

가. 기업형태별 차이

기업형태별로 포탈성향의 정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는 <표 4-10>과 같다. 개인기업과 비상장법인간에 1%유의수준에서 포탈성향의 차이를 보이며, 개인기업의 부가가치세 포탈성향이 비상장법인보다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 업종별 차이

업종별 포탈성향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는 <표 4-11>과 같다. 유의수준 5% 수준에서 각 업종별로 포탈성향이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 매출 규모별 차이

매출규모별 포탈성향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4-12>와 같다. 매출규모에 따라서 기업의 부가가치세 포탈성향은 유의수준 1%에서 차이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규모에 따른 포탈성향의 명확한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Scheffe 검증을 실시한 결과 매출액 5억 이하인 기업과 31억 이상인 기업간에 유의수준 1%에서 차이가 있음이 확인되었으며, 매출액 10억 이하인 기업과 31억 이상인 기업간에도 유의수준 5%에서 차이를 보였다. 또한 매출액 30억 이하인 기업과 31억 이상인 기업도 유의수준 5%에서 차이를 보였다. 이는 매출규모가

<표 4-12> 매출규모별 차이

매출액(1999년 기준)	빈도	평균	제공합	자유도	평균제공	F값	Sig.
5억 이하	148	3.3480	34.885	3	11.628	8.964	.000**
10억 이하	54	3.1250					
30억 이하	49	3.0357					
31억 이상	51	2.3922					
오차	-	-	386.580	298	1.297		

\*\* p < 0.01

<표 4-15> 세무조사 경험에 따른 차이

세무조사경험	빈도	평균	t값	Sig.
없다	252	3.1518	1.991	.047*
있다	49	2.7857		

\* p < 0.05

<표 5-1> 포탈요인과 포탈성향의 관계

측정치 \ 요인	재 무	조세 지식	사회	제재
중요도 지수(B)	4.2333	.997	-.976	.535
p value	.000**	.000**	.000**	.000**

\*\* p < 0.01

적을수록 기업의 부가가치세의 포탈성향이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 라. 세무조사 경험에 따른 차이

세무조사 경험에 따른 포탈성향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는 <표 4-13>이다. 최근 5년 이내 세무조사의 경험이 있는 기업이 없는 기업보다 유의수준 5%에서 부가가치세의 포탈성향이 낮음을 나타내고 있다.

및 제재 요인의 순서대로 4개 요인이 부가가치세 포탈성향에 복합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4개의 요인 중 재무, 조세 지식, 사회 요인에서 납세자의 특성별 차이를 검증하였다. 포탈요인의 차이를 보인 결과는 <표 5-2>와 같다.

세무 행정, 조세 윤리 및 탈세 기대심리의 3개 요인은 예상과는 달리 부가가치세의 포탈성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sup>9)</sup> 따라서 이하에서 4개의 포탈요인을 중심으로 포탈 방지에 관해 검토할 것이다.

## V. 부가가치세의 포탈방지

### 1. 부가가치세 포탈방지

부가가치세 포탈방지는 성실한 세금계산서의 교부와 수취를 향상시켜 포탈성향을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부가가치세 포탈의 원인과 포탈성향의 관계분석을 통해 유의한 포탈 요인을 밝히고, 밝혀진 포탈요인에서 납세자 특성별 차이를 밝히는 것이므로 이와 관련된 포탈방지책을 모색하는데 중점을 두기로 한다.

부가가치세의 포탈요인은 7개의 포탈요인 중 <표 5-1>와 같이 재무, 조세 지식, 사회

### 2. 재무 요인과 포탈방지

#### 가. 재무 요인과 포탈성향

재무 요인이 부가가치세 포탈성향에 가장 큰 영향력(중요도 지수 4.233)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 누락 등을 통하여 탈루된 부가가치세의 순이익화는 세부담의 상대적 불공평을 초래하고, 성실 납세자와 다른 사업자와의 선의의 경쟁을 침해하며, 뒤

9) 이는 조세포탈에 관한 선행연구 중 경제학적 접근법에 따라 제재적 요인을 중심으로 1970 년대에 행하여진 이론적 연구의 가정조건 및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표 5-2〉 포탈요인의 차이

특성 요인	평 균(p value)				
	기업형태	업 종	개업연도	매출액	세무조사경험
재무	개인 3.4244 비상장 2.9608 (.000**)	-	-	31억이상 2.8627 30억이상 3.2698 10억이하 3.2742 5억이하 3.3176 (.000**)	-
조세 지식	-	-	15년이상 3.1742 10년이상 3.3846 5년이상 3.5129 5년 미만 3.6966 (.001**)	31억이상 3.1020 30억이상 3.6286 10억이하 3.6963 5억이하 3.5176 (.001**)	없다 3.5437 있다 3.2571 (.030*)
사회	-	-	-	-	없다 4.0744 있다 3.7704 (.015*)

\*\* p < 0.01 , \* p < 0.05

이어 소득세(법인세)의 포탈로 이어지게 된다. 따라서 경제적 동기에 의한 포탈을 방지하기 위한 다각적이고 특별한 정책적 방안이 요구되는 바가 매우 크다.

#### 나. 재무 요인과 포탈방지

재무 요인에서 개인사업자나 매출 규모가 작은 기업의 포탈동기가 크므로 이들 기업을 중심으로 부가가치세의 포탈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효율적 수단의 강구가 필요할 것이다.

첫째, 조세포탈로 인한 재무 위험이 효익보다 크게 하고, 탈세에 대한 적발확율이

높은 세제 및 세정 운영체계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성실 납세자에 대한 상대적인 경쟁력의 약화와 경영 실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탈루된 부가가치세의 순이익화를 절대적으로 금지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현금유동성과 이익률 등 재무적 상황이 좋은 기업도 신고의 성실도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의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넷째, 현금수입 업종의 세원관리를 강화하여야 할 것이며, 신용카드 또는 전자기장 제도 등 과세표준의 원천적 양성화를 위한 정책 강화가 요구된다.

### 3. 조세 지식 요인과 포탈방지

#### 가. 조세 지식 요인과 포탈성향

조세 지식 요인이 부가가치세 포탈성향에 영향력(중요도지수 .997)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 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의 과세·면세의 구분 및 매입세액 불공제 사유를 잘 모르거나, 개정 세법·고시·예규·지침의 입수에 어려움을 느끼는 등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소득세·법인세 및 회계 지식의 수준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세법 지식의 결여가 포탈의 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 나. 조세 지식과 포탈방지

조세 지식 요인에서 사업기간이 짧은 기업, 매출 규모가 작은 기업 그리고 세무조사 경험이 없는 기업의 포탈동기가 크므로 이들 기업을 중심으로 부가가치세의 포탈을 방지하기 위한 다음과 같은 수단의 강구가 필요할 것이다.

첫째, 조세 지식의 향상은 조세포탈 방지 특히 비자발적 포탈방지에 공헌한다. 따라서 세무사나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제도적으로 유인하여야 할 것이다. 영세사업자 등에 대하여는 국세청의 세무상담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적극 홍보하고, 전문상담요원을 양성하며, 현재 구두상담과 서면상담의 일원화를 위한 개선이 요구된다.

둘째, 끊임없는 과세당국의 납세교육과 홍보 강화에도 불구하고 세법·고시·유권해석 등의 빈번한 개정은 납세자에게 커다

란 부담이다. 따라서 법령의 개정은 수시로 하되 이의 시행 시기를 매년 1월 1일, 7월 1일 등과 같이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규라 불리어지는 유권해석에 있어서 종전의 것을 반복하거나 종전의 것에 상충되는 경우에는 종전 것의 반복 또는 상충 여부를 새로운 유권해석에 반드시 명기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법령해석의 경우 법적·경제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이 견지되도록 국고주의적 사고에서 벗어나 납세자의 이익에 기초하여야 할 것이고 또한 법령에서 과세요건을 명백히 규정한 바 없는 경우에는 법규의 창설적 기능을 갖는 유권해석은 금지되어야 할 것이다.(함영복, 2000. pp.86-88)

### 4. 사회 요인과 포탈방지

#### 가. 사회 요인과 포탈성향

일반적으로 사회 요인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조세포탈의 감소를, 부정적 인식은 조세포탈의 증가를 초래할 것이다. 따라서 사회 요인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포탈성향과 부(-)의 관계를 형성할 것이다.

포탈요인이 포탈성향에 미치는 영향의 분석결과 중요도가 -.976으로서 사회 요인이 포탈성향의 감소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부가가치세 납세자의 정부와 과세당국에 대한 신뢰도, 사회의 공평성, 세금과 사회복지향상에 대한 인식수준은 상당히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 나. 사회 요인과 포탈방지

사회 대한 인식수준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지요인에서 세무조사 경험이 없는 기업이 조세포탈의 동기가 크므로 세무조사 경험이 없는 기업을 중심으로 부가가치세의 포탈방지를 위한 수단의 강구가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세무조사 경험이 없는 기업의 정부와 과세당국에 대한 신뢰도, 사회의 공정성, 세금과 사회복지향상에 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5. 제재 요인과 포탈방지

### 가. 제재 요인과 포탈성향

포탈요인들의 상호작용 결과 제재 요인도 부가가치세의 포탈성향에 영향(중요도지수 .535)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부가가치세 납세자인 사업자의 특성에 따라 제재 요인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나. 제재 요인과 포탈방지

조세포탈의 방지차원에서 가장 효율적 방안 중 하나가 제재 수준의 합리적 조정일 것이다. 다른 요인들과는 달리 사업자의 특성에 따라 제재 요인에 차이가 없으므로 불성실 납세자의 제재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1) 가산세율의 상향조정

납세의무 불성실에 대한 처벌이 가산세와 조세범처벌로 양극화되어 있는 처벌구조 하에서 낮은 수준의 가산세와 높은 수준의 조

세범처벌은 중간 단계에 있는 탈세를 처벌하기가 곤란하다. 따라서 가산세의 수준을 현행보다 높여 위반 항목별 가산세율을 30~40%로 하든가, 아니면 영국(15% 또는 100%) 또는 프랑스(40% 또는 80%)와 같이 증가산세를 신설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 증가산세는 일반적 또는 일상적이 아닌 ① 사기 또는 중과실에 의한 세액의 탈루, ② 탈루금액이나 탈루비율이 과다하게 높은 경우, ③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거나 허위로 발행하는 경우에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sup>10)</sup>

탈세를 시도하는 자가 많은 경우 다수를 조세범으로 처벌하여 이들을 모두 범법자로 만드는 부작용 때문에 사실상 그 처벌의 실행이 미약할 수밖에 없으므로 가산세의 강화를 통해 탈세를 방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 (2) 조세범처벌의 실효성 있는 집행을 위한 벌금형량의 경감

가산세는 불성실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위한 제재적 수단이기도 하나 조세포탈을 근절시키기에는 미흡하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와 같이 미약한 가산세 구조를 갖고 있는 경우 탈세의 성공에 따른 이익이 실패에 수반하는 위험보다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탈세가 만연된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 그 처벌의 엄격한 집행이 실행되어 그 예방을 기해

10) 증가산세율은 우리나라의 세무조사 수준을 비교하여 볼 때 탈루세액의 30% 내지 70%가 적당할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손광락, 1997, pp.81-82)

야만 한다. 조세범에 대한 처벌이 가져오는 1차적 효과인 탈세의 예방은 그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예방의 실효성은 기대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조세범의 처벌이 지나치게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어 오히려 그 처벌을 어렵게 하고 있다. 탈세가 만연된 상태에서 적발되는 모두를 조세범으로 처벌한다면 많은 범죄인을 양산할 뿐 아니라 통고처분에 의해 세액의 몇 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납부하게 되면 수많은 납세자가 도산의 위험에 처하기 때문에 세정당국은 과세실무에 있어서 본세와 가산세의 추징에 치우치게 되고 통고처분과 고발 등 조세범으로의 처벌을 기피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한국조세연구원, 1994. pp.21-23과 최명근, 1995, p.203도 같은 입장)

따라서 조세범처벌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포탈세액의 최고 2배 내지 5배까지의 과중한 벌금형량을 최고 1.5배 내외로 낮출 필요가 있다. 일본의 경우 벌금형의 경우 그 한도를 포탈세액의 1배를 한도로 하고 있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정영현외, 1996, p.290) 벌금형량을 낮추어 예외 없는 현실적 집행이 가능하도록 하여 탈세예방의 실효성을 추구하여야 한다.

### (3) 엄격한 조세범처벌 및 그 내용의 공개

포탈이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예를 들면, 문서위조나 변조에 의하여 탈세하는 것을 말하며, 탈세자들의 행위는 단순한 세법의 위반을 넘어 범죄의 영역에 속한다. 따

라서 탈세자는 세액의 추징 외에 정해진 처벌형량에 따라 엄격하게 처벌하고 그 처벌 내용은 가능한 한 공개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처벌은 다른 납세자에게 본보기가 되어 예방의 효과를 직접적으로 가져오기 때문이다. 이는 IMF의 효과적인 부가가치세 행정을 위한 지침에서도 권고되고 있는 사항이다.(유시권, 1996, p.124)

### (4) 사업장의 일시 폐쇄 등 새로운 처벌제도의 마련

#### (가) 사업장 폐쇄제도의 신설

체형이나 벌금 외에도 무신고납세자 등에 대하여 매우 엄격한 재정적 부담을 과할 수 있다. 볼리비아·칠레·필리핀·대만 등에서는 부가가치세 등 납세자가 법령에서 정한 특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사업장을 일시적으로 폐쇄하는 처벌을 가하고 있으며, 이는 IMF의 효과적인 부가가치세 행정을 위한 지침에서도 권고되고 있는 사항이다.(유시권, 1996, p.123)

#### (나) 단순무신고죄의 신설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에 대한 정당화 사유의 입증책임을 납세자에게 전가하는 방식으로 단순무신고 및 과소신고를 처벌하는 규정을 조세범처벌법에 신설할 필요가 있다. 단순무신고와 과소신고는 외형상 조세포탈의 기본적 수단임에도 그 행위의 사기성 또는 부정성에 대한 입증 없이는 현행법상 처벌이 불가능하다. 이는 조세포탈의 유인동기가 된다. 따라서 이러한 조세포탈을 근원적으로 봉쇄하기 위해서는 포탈의 기초

단계인 단순무신고와 과소신고를 조세범으로 처벌해야 한다. 다만, 단순한 실수를 형사범으로 처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는 질서범으로 취급하여야 할 것이다.(국세청, 1999, p.93)

(5) 무기장의 근절과 장부보존기간의 연장

(가) 무기장의 근절

1998년 귀속분 소득세의 경우 장부·증빙에 의한 근거과세 인원이 495,045명(총 신고인원의 40.4%)이고 추계과세 인원이 717,950명(총 신고인원의 58.6%)이며 나머지 1%는 기장을 요하지 않는 비사업자이다. 부가가치세의 경우도 이와 유사한 비율 이상의 무기장이 행하여질 것으로 추산되며, 이는 근거과세 및 세무조사를 통한 올바른 조세부담의 실현에 역행하는 납세의무불성실의 한 유형이다.

무기장은 현행 조세범처벌법상 5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나, 과세실무에서 무기장을 조세범으로 처벌한 실례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다. 현행의 부가가치세법은 매출과 매입 등 기장의무를 법제화하였으나 이의 위반시 가산세 부과 등 처벌조항이 없다. 그 기장의 형태가 간소하든 복식부기에 의하든 납세자 유형별 기장의무를 강화하고 이의 위반시 가산세 또는 조세범으로의 처벌을 하여야 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후술되어질 세금계산서 및 신용카드의 개선방안의 하나로 논의되는 전자기장제도를 도입함이 바람직하다.

(나) 장부보관 및 보존기간의 연장  
국세부와 제척기간이 5년 내지 10년임을 감안하여 현행 5년으로 규정되어 있는 장부보관 및 보존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여야 할 것이다.(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이는 전자계산조직에 의한 보관 및 보존을 통해 커다란 어려움 없이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6. 납세자 특성별 포탈성향과 포탈방지

첫째, 개인기업이 비상장법인보다 부가가치세의 포탈성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개인 사업자에 대한 세무관리를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도·소매업의 포탈성향이 가장 높고 다음이 제조업, 음식·서비스업과 건설업의 순으로 나타났다. 유통업인 도·소매업의 포탈정도가 가장 크므로 이에 대한 세무관리의 강화와 함께 유통정보시스템(POS 시스템, 거래기록의 전산화, 거래당사자간 EDI 구축 등)의 도입에 대한 세제 및 세정상의 유인책 수립이 요구되어진다.

셋째, 매출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부가가치세의 포탈성향이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매출규모가 작은 사업자에 대해서 세무관리를 강화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넷째, 세무조사경험이 없는 기업보다 조사를 받은 경험이 있는 기업의 포탈성향이 낮게 나타났다. 세무조사의 경험이 있는 기업의 포탈성향이 낮으므로 불성실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의 확대 실시가 요구되어진다.



## VI. 결 론

### 1. 연구의 요약과 포탈방지 방안

#### 가. 연구의 요약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에 관한 포탈요인을 추출하고, 포탈요인이 포탈성향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부가가치세 납세자의 특성에 따라 포탈요인과 포탈성향에 차이가 존재하는지 실증적으로 분석·검증하였다. 분석과 검증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첫째, 부가가치세에 관한 포탈요인은 재무, 세무행정, 조세지식, 조세윤리, 탈세 기대심리, 사회 그리고 제재의 7개 요인으로 나타났다.

둘째, 부가가치세 포탈요인으로 포탈성향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재무, 조세지식, 사회와 제재의 4개요인 순으로 밝혀졌다. 이는 기업이 부가가치세를 포탈하는 가장 큰 이유가 경제적 동기에 있음을 보여 주며, 포탈요인 중 납세자 요인(재무, 조세지식, 사회)이 정부 요인(제재)보다 부가가치세의 포탈에 더욱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셋째, 부가가치세 포탈요인에서 사업자의 특성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① 재무 요인에서 개인사업자가 비상장법인보다, 매출 규모에서 5억 이하 기업이 31억 이상의 기업보다 포탈의 정도가 컸다.
- ② 조세 지식 요인에서 사업기간이 5년

미만인 기업이 15년 이상인 기업보다, 매출 규모가 5억 이하 기업이 31억 이상의 기업보다 또한 세무조사 경험이 없는 기업이 있는 기업보다 높은 포탈의 정도를 보였다.

- ③ 사회 요인에서 세무조사 경험이 없는 기업이 있는 기업보다 높은 포탈의 정도를 보였다.

넷째, 사업자의 특성별 부가가치세 포탈성향에 대한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① 개인기업이 비상장법인보다 부가가치세의 포탈성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 ② 도·소매업의 포탈성향이 가장 높고 다음이 제조업, 음식·서비스업과 건설업의 순으로 나타났다.
- ③ 매출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부가가치세의 포탈성향이 낮게 나타났다.
- ④ 세무조사경험이 없는 기업보다 조사를 받은 경험이 있는 기업의 포탈성향이 낮게 나타났다.

#### 나. 포탈방지 방안

정부와 과세당국은 조세정책을 수립하고 운용함에 있어서 위에서 분석된 연구결과의 시사점을 착안하여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첫째, 개인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포탈성향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개인 사업자에 대한 세무관리를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업종에 따라 포탈성향이 다르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유통업인

도·소매업의 포탈정도가 가장 크므로 이에 대한 세무관리의 강화와 함께 유통정보시스템(POS시스템, 거래기록의 전산화, 거래당사자간 EDI 구축 등)의 도입에 대한 세제 및 세정 상의 유인책 수립이 요구되어진다.

셋째, 매출액 규모가 작은 기업의 부가가치세 포탈성향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매출규모가 작은 사업자에 대해서 세무관리를 강화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넷째, 세무조사의 경험이 있는 기업의 포탈성향이 낮으므로 불성실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의 확대 실시가 요구되어진다. 따라서 ① 세무조사를 통해 음성·탈루 소득의 적출과 추징·처벌을 통하여 정부와 과세 당국에 대한 공평성과 신뢰에 대한 납세자의 부정적 인식요인을 제거하여야 하고, ② 성실납세자에 대한 상대적인 경쟁력의 약화와 경영실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탈루된 부가가치세의 순이익화를 절대적으로 금지하여 할 것이다.

다섯째, 재무 요인이 가장 큰 포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개인사업자나 매출규모가 작은 기업의 경우에 재무 요인이 크게 작용하고 있으므로 개인사업자나 매출규모가 작은 기업에 대한 세무관리 시 재무요인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또한 재무요인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는 것이 포탈방지에 효과적일 것이다.

- ① 현금유동성과 이익률 등 재무적 상황이 좋은 기업도 신고성실도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의 대상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 ② 현금수입 업종의 세원관리를 강화하여야 할 것이며, 신용카드 사용 확대 등

과세자료의 양성화에 보다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 ③ 탈세로 인한 이익보다 탈세 적발 시의 불이익 등 위험 요인이 크도록 세제 및 세정이 설계 운용되어야 할 것이다.

여섯째, 조세 지식의 수준도 포탈요인으로 작용한다. 사업기간이 짧을수록, 매출액이 적을 수록, 또한 세무조사 경험이 없는 경우에 포탈요인이 크게 작용한다. 따라서 사업기간이 짧거나 매출액이 적거나 세무조사 경험이 없는 납세자를 중심으로 납세교육과 홍보의 강화를 병행하여 세법지식의 부족으로 인한 비자발적 탈세를 예방하여야 할 것이다.

일곱째, 사회 요인도 포탈요인으로 작용하는데, 특히 세무조사 경험이 없는 경우에 포탈요인이 크게 작용한다. 따라서 세무조사 경험이 없는 납세자를 중심으로 정부와 세무당국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사회적 공평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 2. 유용성과 한계 및 제언

### 가. 유용성

첫째, 부가가치 세제 및 세정 운용체계를 질적으로 개선함에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근거과세를 통한 공평 세부담의 실현으로 사업자간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여 정부와 사회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성실한 자진신고 납세풍토의 정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나. 한계 및 제언

첫째, 설문에 의한 조사분석으로 인한 표본추출상의 편의(bias), 표본의 크기, 응답내용의 낮은 신뢰도 등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둘째, 설문에 의한 조사분석연구는 조세포탈의 결정요인을 통제할 수 없어 조세포탈성향과 포탈요인과의 관계를 정확하게 분석할 수 없는 적용상의 한계가 있다.

이상의 유용성과 한계점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보다 실제 현실에 가까이 접근된 부가가치세 포탈요인에 대한 발전적인 추가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첫째, 설문서의 수를 보다 늘리고 부가가치세 포탈에 관하여 명확한 의도를 갖는 독립 및 종속변수에 대한 설문 문항의 개발을 통하여 보다 타당하고 충실한 결론의 도출을 시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실증분석의 결과 포탈방지의 대안으로 제시된 세계 및 세정의 개선 방안에 대한 실태분석이 요구된다.

셋째, 조세포탈의 요인을 찾아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포탈혐의가 가장 높은 분야 또는 기업을 확인하고 이에 따라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것일 것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국가적 차원에서 조세포탈 및 회피의 원인과 그러한 납세불순응의 실태가 존재하는 납세자 집단을 확인하기 위하여 기 실시된 세무조사의 결과를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연구한 결과는 없다. 세무조사의 결과를 체계적으로 기록·분류·정리하고 이러한 분석자료를 이용하여 조세포탈 또는 납세불순응의 실태 및 원인을 분석하고 그러한 포탈 및 회피가 존재하는 납세자 집단을 확인하는 연구가 요구된다.

## 참 고 문 헌

- 국세청, 1994-1999, 국세통계연보.
- 권학중, 1999, 조세회피의 요인과 규모와의 상관관계, 한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영강, 1990, 조세정책의 불응요인 분석: 부가가치세제를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손광락, 1997, 우리나라 가산세 관련 제도의 합리화: 가산세와 조세형벌의 경제적 분석, 한국조세연구원.
- 오택섭, 1994, 사회과학 데이터분석법, 나남.
- 유시권, 1996, 부가가치세 세제와 행정의 개선방안, 연구보고서 96-11, 한국조세연구원, p.3.
- 이기형, 2000, 납세자의 조세회피요인과 조세회피의 관계에 관한 연구, 대전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범관, 1998, 조세회피행위의 성실납세 유도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임원식, 1998, 조세회피행태에 관한 실증적 연구, 호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재무부, 1990, 한국부가가치세제사, pp.92-93.
- 재정경제부, 1999 4, 2000 5, 조세개요, 1999, p.15와 2000, p.16.
- 정영현·김유찬·박정수·배준호, 1996, 근거과세 정착과 추계과세 합리화 방안, 한국조세연구원.
- 최명근, 1998, 부가가치세법론, 조세통람사.
- \_\_\_\_\_, 1998, 세법학총론, 세경사, p.131.

- \_\_\_\_\_, 1995, 조세재정법의 재정비, 한국조세연구소.
- 최평윤, 1997, 납세자 특성에 따른 조세회피 성향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한국조세연구원, 1994, 국세행정의 개혁방안 (I).
- 함영복, 2000, 최신 부가가치세의 이론과 실무, 경영과회계, p.3., 2000, 세법총론, wh세통람사, p.75.
- 현진권, 1997, 조세관련 통계자료집, 한국조세연구원, p.62.
- Allingham, M. G & A. Sandmo, 1972, "Income Tax Evasion: A Theoretical Analysis," *Journal of Public Economics* 1.
- Alm, J., July 1991, "A Perspective on the Experimental Analysis of Taxpayer Reporting," *The Accounting Review* 66(3), pp. 577.
- Benjamini, Y. & S. Maital, 1985, "Optimal Tax Evasion Policy: Behavioral Aspects," in Gaertner and Wenig.
- Christiansen, V., 1980, "Two Comments on Tax Evasion," *Journal of Public Economics* 13.
- Cuccia, A. D. 1994, "The Economics of Tax Compliance: What Do We Know and Where Do We Go?," *Journal of Accounting Literature* 13, pp.81-86.
- Dean, P., T. Keenan and F. Kenny, 1980, "Taxpayers' Attitudes to Income Tax Evasion: An Empirical Study," *British Tax Review* No. 1.
- Jackson, B. R. and V. C. Milliron, 1986, "Tax Compliance Research: Findings, Problems and Prospects," *Journal of Accounting Literature* 5, pp.125-165.
- Milliron, V. C., 1985, "A Behavioral Study of the Meaning and Influence of Tax Complexity,"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Vol. 23, No. 2, Autumn, pp.138~160.
- Szilagyi, A. D. and M. J. Wallace, 1987, *Organizational Behavior and Performance*, 4th ed., Scott, Foresman and Co., p.703.
- Spicer, M. W. and L. A. Becker, 1980, "Fiscal Inequity and Tax Evasion: An Experimental Approach," *National Tax Journal* 33, pp.171-175.
- Srinivasan, T. N., 1973, "Tax Evasion: A Model", *Journal of Public Economics* 2.
- White, R. A., July 1983, "Employee Preferences for Nontaxable Compensation Plan: An Empirical Study," *The Accounting Review*, Vol. LVIII, No. 3, pp.539~560.
- Yitzhak, S., 1973, "A Note on Income Tax Evasion : A Theoretical Analysis", *Journal of Public Economics* 3.

##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ax Evasion Factors and the Tax Evasion Inclination of Value Added Tax in Korea

Kim, Beom-Jin\* · Ham, Young-Bok\*\*

### Abstract

To prevent the VAT evasion and to form a sound VAT paying culture, we can draw the policy directions for government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tax supervision of small business and the administration of tax sources of cash-income industry.

Second, the tax-deductible rate of the received tax invoices should be increased in a short-term base, and a simplified taxation system should be abolished in a long-term base.

Third, in cases a trader has not received a tax invoice, an additional tax should be applied.

Forth, to issue the tax invoice faster and conveniently, it is requested to introduce a new system which issues electronic card of registration when a businessman applies for his/her business registration.

Fifth, to make tax standard transparent, it is desirable to punish the violator, relating to credit card regulations, stricter than present and to enforce the electronic bookkeeping.

Sixth, for the reduction of noncompliance rate and creating a climate for autonomous, faithful tax return, it is necessary to expand and intensify tax investigation. And also it is necessary to make the level of penalty tax higher up and the level of criminal punishment less down, to keep up tax audit coverage.

Seventh, a trader who is eligible for simplified taxation, whose tax base is under 12,000 thousand won, should not be required to pay the value added tax. But it is desirable to cut down them for the fairness of tax burden.

---

\* Professor, Sangji University

\*\* Certified Tax Accountant

Eighth, the effective date of the revised tax law should be fixed.

Ninth, it is necessary to reinforce publicity and to educate on tax system and administration, for reducing tax evasion or tax avoidance and encouraging faithful tax return.

Tenth, as the tendency of VAT evasion of distribution industry turns out to be the highest, it is requested not only to intensify tax administration on them but also to establish system and incentives, for introducing information system in distribution industry(introducing POS system, computerization of transaction record, establishing EDI between traders).